

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		2018년도 제10차 회의록									
일 시	2018. 11. 30(금) 14:00 ~ 15:00	장 소	CBC B113호								
참석의원	정광희 의원, 김진경 의원, 김재환 의원, 임지영 의원, 황태선 의원, 박재범 의원, 오일숙 의원, 최근영 의원, 김준혁 의원, 배진건 의원										
불참의원	장용석 의원										
간 사	강창호 기획실장, 경희수 기획실 주임										
<p>I. 안 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○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○ 2019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 자문 ○ 2019학년도 1학기 교양교육과정 운영 자문 <p>II. 회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광희 의장(이하 의장)이 의원정수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○ 의장이 우리대학의 학칙 개정 심의,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와 2019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 자문 및 교양교육과정 운영 자문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고 강창호 기획실장(이하 기획실장)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○ 기획실장이 배포된 유인물을 토대로 학부 학칙 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함 ○ 학부 학칙 중 제31조(소속변경),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현 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개 정 (안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제31조 (소속변경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/td> <td> 제31조 (신청자격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미술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가 분리됨에 따라 폐지되는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변경 허용범위와 세 부사항을 따로 적용한다.<신설 2018.12.1.></u> </td> </tr> <tr> <td> 부 칙 (2018.4.1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다만,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 명칭변경 및 소속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.</u> </td> <td> 부 칙 (2018.4.1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<삭제></u> </td> </tr> <tr> <td> <u><신설></u> </td> <td> 부 칙 (2018.12.1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현 행	개 정 (안)	제31조 (소속변경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1조 (신청자격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미술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가 분리됨에 따라 폐지되는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변경 허용범위와 세 부사항을 따로 적용한다.<신설 2018.12.1.></u>	부 칙 (2018.4.1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다만,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 명칭변경 및 소속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.</u>	부 칙 (2018.4.1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<삭제></u>	<u><신설></u>	부 칙 (2018.12.1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
제31조 (소속변경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1조 (신청자격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미술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가 분리됨에 따라 폐지되는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변경 허용범위와 세 부사항을 따로 적용한다.<신설 2018.12.1.></u>										
부 칙 (2018.4.1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다만,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 명칭변경 및 소속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.</u>	부 칙 (2018.4.1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<삭제></u>										
<u><신설></u>	부 칙 (2018.12.1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

현 행	개 정 (안)
	<p>제2조(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) 융합과학대학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는 2019학년도부터 미술치료학과, 상담심리학과로 분리된다.</p> <p>제3조(폐지된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에 대한 경과조치) 2019학년도부터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 모집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술치료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로 전과가 가능하다. 그리고,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 제적자가 재입학을 할 경우에는 미술치료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로 제적된 자로 보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술치료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로 재입학한다. 이 학칙 적용 이전에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분리된 학과로 복학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 후 미술치료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로 복학한다.</p>

[별표3] 수여학위

학 과	수여학위
미술치료학과	미술치료학사
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	미술치료·상담심리학사
상담심리학과	문학사

[별표3] 수여학위

학 과	수여학위
미술치료학과	문학사
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	문학사
상담심리학과	문학사

- 김진경 의원이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
- 기획실장이 학부 학칙 개정 사유는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의 학과 분리에 따른 소속 재학생의 경과조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학사 제반 업무 담당 부서 및 학과 결정사항 적용을 위함임을 설명함
- 기획실장이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 학위 신설에 따라 재대학원 학칙 중 제2조(학과와 과정), [별표2] 학위의 종류, 부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함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장 과정 및 정원</p> <p>제2조 (학과와 과정)</p> <p>① 각 대학원에는 다음의 학과와 과정을 둘 수 있다.</p> <p>1. 일반대학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의학과 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약학과 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학사연계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간호학과 : 석사학위과정 <신설></p>	<p>제2장 과정 및 정원</p> <p>제2조 (학과와 과정)</p> <p>①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<신설 2018.12.01></p>

현 행	개 정 (안)
의생명과학과 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 과정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고령친화산업학과 : 석사학위과정 <신설 2015.5.18.> 2. ~ 8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2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[별표 2] 학위의 종류 1.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(Master of Nursing) <신설>	[별표 2] 학위의 종류 1. 일반대학원 ----- ----- 간호학박사(Doctor of Philosophy in Nursing)
부 칙 <신설>	부 칙 36. 이 학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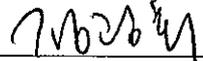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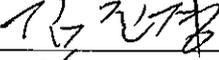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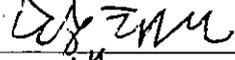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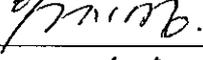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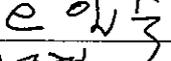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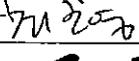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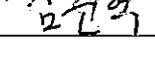
- 기획실장이 2019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 중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중 바이오 공학과와 '실천종합설계와 특허출현' 교과목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승인하고자 함을 설명함
- 임지영 의원이 개설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
- 최근영 의원이 선수과목인 '창의종합설계와 특허' 에서 수행한 공학설계 시제품을 보완하고 발명의 구성요소와 해결수단을 실현,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교과목 개설이 필요함을 설명함
- 아울러 학기 중 수업시간만으로는 해당 과정을 학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초과 실습이 필요하므로 선수과목과 연계하여 실습과정을 개설하면 좋을 것이라 설명함
- 기획실장이 2018학년도 동계 교과목 편성 중 수강인원 미달에 따른 교과목 폐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
- 간호학과와 '기초간호과학(해부학)' 은 수강인원이 7명이기는 하나 담임교수의 일정 상 2019년 하계계절학기 개설이 어려우며 전공기초 과목이며 재수강 필요학생이 있으므로 개설이 필요하며, 식품생명공학과와 '졸업시험' 은 4학년 2학기에 비전학기 진행으로 정규학기에 개설된 졸업시험은 수강이 불가하며 졸업요건 충족을 위하여 이수가 필요하므로 개설이 필요함을 설명함
- 김준혁 의원이 학생들의 졸업 충족 요건이나 전공기초 학습에 문제가 없도록 대학 측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함
- 기획실장이 2019학년도 1학기 교양교육과정 공통기초 과목, 일반교양 과목(특화 교양), 일반교양 과목(선택교양), 학과내교양, 핵심역량기반 신규 강좌 개설, P/F 교양과목, 미개설 교양과목 중 신설과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함
- 공통기초 과목 중 1학년 과목은 채플과 성서의 이해 3개반, 진로탐색 11개반,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6반, 창의컴퓨팅 4반, 영어1, 글로벌영어1 총 39반을 개설

하고 2학년 영어3, 글로벌영어3은 총 17반 글로벌핵심영어1은 3반을 개설하고자 하며 총 10과목에 대하여 85반을 개설하고자 함을 설명함

- 일반교양 과목(특화교양) 중 ‘영화 속이 생명과학’, ‘행복배움’, ‘행복한대학생활(가제)’, ‘웰스케어 콘텐츠 제작’ 을 신설하고자 하며 일반교양 과목(선택교양) 중 ‘글로벌 이슈 영어 논의’, ‘영어독서와 스토리텔링’, ‘영어시험 전략’, ‘중국알아가기’, ‘광고 크리에이티브’, ‘사회와 법률’, ‘회계의 이해’, ‘현대문화와 도시’, ‘이미지메이킹’, ‘통기타로 노래하기’ 를 새로 개설하고자 함을 설명함
- 김준혁 의원이 학과내 교양은 몇과목 신설되는지 질의함
- 오일숙 의원이 총 24과목 개설되며 올해 새로 신설되는 교양은 없음을 설명함
- 오일숙 의원이 2018학년도 1학기과 비교하였을 때 특화교양에서 두 과목, 선택교양에서는 12과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음을 설명함
-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기획실장에게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0조(회의결과)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설명하다.
- 기획실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의 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하다.

III. 폐회선언

○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

확인	의원	서명	의원	서명
	정광희		김재환	
	김진경		황태선	
	임지영		박재범	
	오일숙		최근영	
	김준혁		배진건	
	장용석			